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2022 제주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호남지부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2022

제주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제주
특별자치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호남지부
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
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목 차

○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소개	3
○ 2022 제주 사회복지 비전, 목표, 전략	9
○ 2022 제주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13
I. 6대 핵심 아젠다	15
II. 사회복지 분야별 아젠다	28
○ 후보자 답변 서식	63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I

출 범 배 경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대응과정에서 민간 사회복지계는 더욱 화합하고 결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의 현안에 대해서는 직종과 분야를 불문하고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낼 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경험한 우리는 민간 사회복지 현장이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이행추구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고 임기 중 실천을 요구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II

조 직 구 성

1. 수석대표 : 고승화 회장(사회복지협의회)
2. 상임 공동대표 : 문성은 회장(사회복지법인협회) 김금자 회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
3. 공동대표 : 수석대표 및 상임 공동대표를 제외한 포럼 참여단체 대표자 전원
4. 정책자문단 : 고보선 교수·김도영 교수(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오윤정 박사(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고명희 (전)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장
정석왕 회장(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장애인요양원장)
5. 실무위원장 : 사회복지법인협회 강승동
6. 실무위원 : 포럼 참여 직능단체 추천인 20명
7. 간사 : 김성건 사무처장(사회복지협의회)

Ⅲ 참여단체 및 대표단 · 실무위원 명단

연번	구분	단 체 명	공동대표단	실무위원회	
				성명	소속 및 직위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수석대표)	김성건 (간사)	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최진숙	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3	법 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협회	문성은 (상임공동대표)	강승동 (위원장)	도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국장
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협회	이재문	오창섭	서호요양원 원장
5	노 인 복 지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협회	이성덕	김경화	예담재가복지센터장
6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	휴 완	문은정	도 노인복지관 과장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한정효	부은숙	도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
8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양예홍	문상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9	장 애 인 복 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김금자 (상임공동대표)	박주현	송향원 원장
10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이민숙	고승희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백인협	백유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사무국장
1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강지영	이미숙	제주보육원 사무국장
13	아 동 복 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허정례	강은주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무국장
14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김완숙	윤문희	제주몽생이그룹홈시설장
15	청 소 년 복 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호남지부 제주지회	고민좌	윤인노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16	여 성 복 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 협의회	홍부경	양금선	제주YWCA통합상담소 소장
17	노 숙 인 복 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	김성자	김미옥	제주시희망원 사무국장
18	정신건강 복 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박정해	김민범	무지개마을 사무국장
19	지 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	조성태	권미애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20	복 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	김두선	안성관	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장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출범 선언문

2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비롯해 이혼율, 범죄율, 교통사고 발생 건수, 청소년의 자살률과 비만율 등 부정적 지표에서 수년 동안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과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성찰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대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도지사가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지역 20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복지정책 제안 및 공약 반영 요구, 이후 공약실천 과정에 함께 할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출범을 선언한다.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제안한다.

둘, 우리는 각 복지영역의 손익을 떠나 제주 사회복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안한다.

셋, 우리는 깊이 있는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선의 복지정책을 하나된 목소리로 제안한다.

넷, 우리는 제안된 복지정책이 도지사 후보자들의 복지공약으로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다섯, 우리는 공약으로 반영된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을 다한다.

2021년 11월 5일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공동대표 일동



2022

제주 사회복지 비전, 목표, 전략

2022 제주 사회복지 비전, 목표 및 전략

I 비 전

민간과 공공의 효과적이고 상호대등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도민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를 비전으로 설정

II 목 표

- 기초가 튼튼한 지속 가능 복지 : 최소한 전국평균 수준의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균등한 처우 보장으로 안정적이고 건실한 사회복지실천 기반 마련 지향
- 도민을 위한 역동적 복지 : 제주특별자치도민 삶 전반에 대한 적정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전문성 있는 거버넌스 복지 : 공공과 민간의 복지실천 역량 제고로 상호신뢰하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협치 기반의 제도적 완성

III 실천전략

‘제주 사회복지정책 6대 핵심 아젠다,
사회복지 분야별 33개 아젠다’의 실현

비 전

도민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

목 표

기초가 튼튼한
지속 가능 복지

도민을 위한
역동적 복지

전문성 있는
거버넌스 복지

전 략

지속가능 복지

사회복지예산 30% 확보

사회복지종사자 안정적 처우 보장

역동적 복지

전 도민 사회보장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실행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환경 조성

거버넌스 복지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정책 민·관협의 제도화



2022

제주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제주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개 기관과 단체가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을 바라며
드리는 제안입니다.

I . 6대 핵심 아젠다

1 사회복지예산 30% 확보

2 전 도민 사회보장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실행

3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

- 3-1.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사회복지부서 개방형 임용제도 유지
- 3-2. ‘도-행정시 복지사무예산 조정위원회’ 운영
- 3-3.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으로 43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100% 설치
- 3-4. 제주특별자치도 ‘돌봄 정책관’ 직제 신설

4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환경 조성

- 4-1. ICT 융합 기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복지 지원센터’ 운영
- 4-2. 사회복지현장 안전보건지원 시스템 구축
- 4-3. 도민복지대학 상설 운영

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협치 기본조례」 제정

6 사회복지종사자 안정적 처우 보장

- 6-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 6-2.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확대

1 사회복지예산 30% 확보

가.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예산이 20% 수준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복지 예산비중 (일반회계)	전국평균(%)	25.	25.8	27.2	28.7	31.3	32.2
	제주도(%)	20.1	19.4	20.8	21.7	22.9	24.5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나. 그나마 확보된 사회복지예산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국비 반환액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음.

- 1) 세출액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2016년) 16.3%, (2017년) 18.8% (2018년) 16.5%
- 2) 사회복지분야 국비 반환액 : (2018년) 63억원 (2019년) 257억원

다. 2025년 도래하는 초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 요구 증가,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등 취약계층 증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등의 부각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양적 증가, 개인의 복지욕구 다양성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규모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임.

라. 민선 7기 도정에서도 ‘사회복지예산 25%’를 공약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하지 않는 ‘제주형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의회의 협치의 틀 안에서 사회복지예산 30%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함.

2

전 도민 사회보장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실행

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기준으로는 제주지역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부합하는 제주도민의 삶의 적정수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나. 이를 위해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기준을 설정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으로서 지난 2019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연구된 바 있음.

다. 2020년에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평가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1년에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도 반영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음.

라. 복지기준선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범위 내에서 도민 삶의 전반에 해당되는 분야의 복지기준을 도민중심의 관점에서 마련한 것으로 제주도의 복지철학과 자치복지의 의지가 담긴 상징적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9개 영역 : 돌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생활), 환경, 소득, 안전

마. 이에 ‘복지기준선’ 실천을 위한 각종 핵심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적정 기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함.

바. 또한, 제주도민이라면 ‘복지기준선’을 근거로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여야 함.

3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

3-1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사회복지부서 개방형 임용제도 유지

- 가. 도민의 권리의식 증진,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복지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업무의 중심은 주민복지, 사회복지로 이동하였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선 7기 도정인 경우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하여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는 혁신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 나. 도 본청 사회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민간 전문가 임용은 행정관료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한 현장중심의 복지정책추진(통합복지하나로,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으로 성과를 얻었으며, 복지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비롯해 민·관의 입장을 중재하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복지 거버넌스’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음.
- 다. 또한, ‘탈시설화’ 정책추진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으로의 전달체계 개편으로 기존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가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 이용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라. 따라서, 민선 8기 도정에서도 사회복지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현재 개방형 임용제도를 유지하여야 함.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사회복지에 대한 과감하고 분명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할 필요가 있음.

3-2

‘도-행정시 복지사무예산 조정위원회’ 운영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예산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향후 복지재정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나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예산담당관 주도로 ‘도’와 ‘행정시’의 사회복지예산이 배정되고 실제 복지사무 담당자와의 구체적인 사전 논의 없이 예산이 확정되는 체계는 ‘도’와 ‘행정시’ 복지사업의 유사중복성, 불균형성, 등을 제거할 수 없는 구조이며,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다. 사회복지예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가 낮게 평가¹⁾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²⁾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 주관지표 10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2) 부서별 유사제도, 도·행정시·읍면동의 비효율적 업무분장, 서비스 중복 제공, 공공 부서 간 칸막이(소통부재), 공공 복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

다. 이에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 및 도-행정시 사회복지예산 항목 검토(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사무조정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위원회로서 ‘도-행정시 복지사무예산 조정위원회’ 운영이 필요함.

3-3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으로 43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100% 설치

- 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지역이 25개(제주시13, 서귀포시12)로 전체 읍·면·동의 58.1% 수준임.
- 나. 일부 읍·면·동의 경우 맞춤형복지팀이 권역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다. 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등을 통해 43개 읍·면·동 전 지역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균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라. 특히,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직 정원은 도 전체 공무원 6216명 중 5.9%인 312명(휴직 등 별도정원을 제외할 경우 5.2%)으로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이 전국적으로 이미 2014년에 6%를 넘어서 2020년말 기준 9.6%인 것과 비교해 10년 이상 뒤쳐진 현실임.
- 마. 이로인해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020년말 현재 3968명으로 전국 3위 수준이며 이는 전국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인구 2607명에 비해 1361명이나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음.
- 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제주도 43개 읍·면·동 전 지역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균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현재 과다한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 현실도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것임.

3-4

제주특별자치도 ‘돌봄정책관’ 직제 신설

- 가. 코로나19 이후 위기가구(제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 2019년 기준 3.6%에서 2021년 기준 4.4%로 급증)가 급증하였고 복지사무가 확대되었으나, 현재 ‘도’의 일반 복지사무직제는 보건복지여성국 1개 국(복지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으로 이루어져있음. 2018년 성평등 정책관(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직제가 신설되었으나, 복지사무를 추진한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 나. 2021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업무량 및 적정인력 분석 연구]에 의하면 향후 복지사무로 대응이 필요한 영역 1순위로 1인가구 지원(35.2%)-아동학대지원(18.7%)-주거복지지원(14.3%) 순으로 나타남
- 다. ‘돌봄정책관’을 신설하여 정부의 돌봄 국가책임제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제를 마련하고, 향후 복지사무로 대응이 필요한 영역 1순위인 1인가구지원과 함께 지역사회통합돌봄, 아동돌봄을 담당하도록 하여 복지분야의 신규 수요에 대한 대응, 예방적 복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시도에 비해 공공복지분야에 대한 관심(투자)가 매우 미흡함. 이는 제주지역 공공복지사무의 예산(22년 복지예산 22.3%), 인력(21년 8월 기준 전체 공무원 대비 5.9%)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음.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2019년 기준 전국평균 28.7%를 상회하고 있고, 사회복지직 인력의 경우, 2020년말 기준 전국평균 9.6% 수준이며, 2021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기본형 설치는 약 58% 수준(타지역 95%이상 설치 완료)임을 감안할 때, 공공복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4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환경 조성

4-1

ICT 융합 기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복지 지원센터’ 운영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인력 및 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를 거두고있음.
-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관리,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비대면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은 물론 민간 기관 간의 협업체계 역시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기술과 복지가 접목된 한 단계 차원 높은 수준의 복지환경 조성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라. ‘스마트복지 지원센터’ 는

- 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접목 가능한 국내외 ICT 정보 소개 및 전문 인력 연결
- 2) 전문기관 등에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한 ICT개발 제안 - 리빙랩으로 효과성 검증
- 3) 비대면 사회서비스 복지환경 구축을 위한 디지털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 4)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쌍방간 소통 기반 강화로 고령인구 및 장애인구 등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스마트 환경 지원
- 5) 미래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6)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회의, 교육, 방송진행,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지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임.

4-2

사회복지현장 안전보건지원 시스템 구축

- 가. 사회복지시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인원이 이용 또는 거주하고 있어 ‘안전과 보건’은 시설운영의 핵심 사항으로 인식되어야 함.
- 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나 ‘안전과 보건’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일부 시설관리기사가 배치된 시설이 있으나 하위 직급으로 전문인력 채용은 불가능한 여건임.
- 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시설장에게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시설의 모든 분야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라. 따라서,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 안전 및 산업보건 전문기관 등과의 계약을 통해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관리·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마. 또한 제주지역사회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음.

4-3

도민복지대학 상설 운영

- 가.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은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날로 중요해져 가고 있음.
- 나.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 확충이 최우선 과제이긴 하나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역 복지사업 추진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다. 이에 사회복지 전문 교육 수행이 가능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도민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이론과 복지에 대한 이해,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라.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 대상으로 단기간 교육이 진행되어 교육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며, 실습과정 등 깊이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음.
- 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물론 지역 자생단체, 공공기관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교육 수강을 의무화함으로써 복지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라. 또한,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여 복지에산 절감, 보편적 복지실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협치 기본조례」 제정

1.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시민에 대한 복지의 1차적 책임과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나 복지 분야처럼 광범위한 정책을 공적역할로서만 수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2. 그러나, 민·관의 수평적 협력과 의사소통은 민간사회복지계의 일방적인 요청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복지현장의 지배적인 의견임. 행정조직 내의 수직적 의사결정과 이행을 민간에도 강요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조금 지원 등의 이유로 이에 마지못해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민·관 협력으로 포장되고 있는 실정임.
3. 이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실질적인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복지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4. 이에 민·관·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폭넓게 논의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복지거버넌스(Governance)’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5. 지속가능한 ‘복지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운영을 위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복지협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예측가능한 복지정책 수립 및 이행,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6. 이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도모하는데 민·관·의회가 협력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선언적 의미로서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활동에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6

사회복지종사자 안정적 처우 보장

6-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비로 인건비를 전액 또는 일부 보조받는 209개 사회복지시설(지방비지원시설 99, 국지지원시설 110)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2013년 2월(국비지원시설 2015년 4월)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나.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제정 이후 각각 22회, 16회 개정이 이뤄졌으나 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단편적으로만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왔음.

다. 현재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은 장기근속자의 승진·승급기회 제한, 비현실적(근로기준법 기준 미달) 시간외수당 지원단가,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직급별 정원 기준 제시, 지역아동센터인 경우 경력 미인정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21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전면적인 개정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나 용역진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마.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저하와 시설 유형간 상대적 박탈감 증가 등 사회복지현장에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시급함.

6-2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확대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기계발, 문화생활을 통한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나.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은 2019년, 2020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종사자에만 해당되었으나, 2021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되었음.

다. 그러나, 사업시행 4년차인 2022년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반쪽짜리 처우개선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미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양로시설 종사자, 재가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법정사회복지단체 종사자 등

라. 이는 ‘복지포인트’ 지원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현장 종사자간의 평가르기와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동등한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함.

II. 사회복지 분야별 아젠다

(단체명 가나다 순)

01_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 1-1. 여성복지사업 제도개선
- 1-2.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설치

02_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협회

- 2-1. 비영리법인 운영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 2-2. 양로시설 냉난방비 현실화
- 2-3.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인상
- 2-4. 복지포인트 지원액 인상
- 2-5. 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시 간병비 현실화

03_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

- 3-1.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 기준에 의한 인력 증원
- 3-2.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 3-3.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제도적 정착 및 지속 추진

04_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협회

- 4-1. 사회복지법인 전담인력 지원
- 4-2. 사회복지법인 운영비 지원

05_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 5-1.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 5-2. 국립 사회복지사 연수원 유치

06_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 6-1. 보건복지부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준수

07_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협회

- 7-1.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통비 및 복지포인트 지원체계 현실화

08_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 8-1. 제주형 아동 돌봄 서비스 실현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
- 8-2.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로 안정적인 제주형 아동통합돌봄서비스 구현

09_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

- 9-1. 지역자활센터 기본 인프라(사업장) 무상임대 지원
- 9-2. 자활사업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와 활성화
- 9-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도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9-4.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 확충 및 사업 활성화

10_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10-1. 그룹홈 인력 증원
- 10-2. 그룹홈 임대료 지원

11_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

- 11-1.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

12_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12-1. 장애인복지관 최소인력 기준에 의한 인력 증원
- 1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개선
- 12-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개선

13_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13-1.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인력 고용안정 보장

14_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14-1.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비율 3% 확대
- 1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확대

15_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 15-1.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확대

16_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호남지부 제주지회

- 16-1. 청소년복지사업 제도개선

1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1-1. 여성복지사업 제도개선

- 여성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
- 피해여성 상담소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제도 마련

가. 여성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

-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복지시설의 경우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는데 비해 시설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호와 정서적 안정 등의 시설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2) 특히,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자부담분 예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 이전을 하게 되면 시설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3) 이에 여성복지시설의 임대료 지원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가 아닌 매입으로 전환되어야 함.

나. 피해여성 상담소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제도 마련

- 1) 상담소는 현재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이 없고 여성폭력방지조례 근거로만 지원 가능하나 집행기준지침이 없어 실행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 2) 또한, 상담소의 경우는 운영비 등에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자산취득 성격의 기자재 구입도 제한적임.

- 3) 이로인해 상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담소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은 물론 근로의욕도 저하되고 있음.
- 4) 상담소 기능보강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제주도 여성보호분야 집행기준지침’에 상담소 기능보강예산 지원기준을 명문화하여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함.

1-2.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설치

- 가. 가정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이 긴급 분리·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음.
- 나. 발달장애인인 경우는 그나마 단기(1~2일)로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체적 장애인인 경우 도내에는 편의시설이 완비된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없음.
- 다. 타 지역 보호시설 이용은 피해자가 불안함을 느끼고 이동 등의 제약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라. 현재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의 상담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장애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부재로 상담원들이 계속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마. 이에 장애특성에 맞는 안전한 돌봄과 자립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협회

2-1. 비영리법인 운영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어르신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실천하는 전문 민간 노인 돌봄 주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영리목적(개인·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과 구별됨.
- 나.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설립 당시 지역 안배를 두어 도시권 내에 시설 설립을 허가 받지 못하면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소자 및 종사자 구인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음.
- 다.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영리목적(개인·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 등) 운영 시설에 대해 설립과 운영, 규제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 오히려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법인 시설 등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높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함.
- 라. 이에 공공 돌봄 강화와 취약지역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권의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방역물품비, 건물유지비 등의 제대로 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 마. 이 때, 운영비 지원은 예산지원의 확대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체계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바.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 운영 시설 37개소
 지원예산액 : 월 500,000원 × 37개소 × 12개월 = 222,000천원

2-2. 양로시설 냉난방비 현실화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은 관리운영비가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연 936,200원으로 월 금액 환산 시 1인당 78,016원이어서, 관리운영비 예산 집행하기에는 매우 비현실적 기준임.

나. 시설 관리운영비는 생활시설 운영상의 필요경비로 직능별 구분없이 같은 수준으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과는 1인당 무려 2배 가까운 차액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임.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한 호흡기 질환, 심·뇌혈관 질환 등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임에도 현재 시설관리운영비는 난방비 사용에 현실적이지 못함.

다. 냉난방비 지원 현황(제주특별자치도)

구분	2016~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지원금액	5,000,000원	3,500,000원	3,500,000원	

라. 2021년 냉난방비 지출액(제주평화양로원 기준) : 19,075,070원

- 6월~8월 여름철 냉방으로 매월 약150~200만원 지출, 11월~5월 초가을부터 봄까지 난방으로 매월 200만원 이상 지출이 발생하여 월평균 관리운영비의 절반은 전기료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운영비 부족분을 시설에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마. 또한,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관리운영비 경우(50인 기준) 아동시설대비 54.3%, 장애인시설대비 51.5%에 불과한 실정임.

바. 지원대상 : 제주도내 양로시설 2개소

지원예상액 : 연15,000,000원 × 2개소 = 30,000,000원

2-3.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인상

가. 기본현황

구분	처우개선비	교통비
지원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 지침	좌동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인 노인복지법(제31조)에 의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상근 근무자	좌동 (단, 시설장 제외)
최초 시행일	2013. 1. 1.	2018. 9. 1
지원 기준	(시설장) 150천원, (1~4년) 170천원, (5~9년) 180천원 (10년 이상) 200천원	월 100천원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지원 삭감 등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함.

2-4. 복지포인트 지원액 인상

가. 기본현황

- 1) 지원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 2)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인 노인복지법(제31조)에 의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상근 근무자에 한해 지원
- 3) 최초 시행일 : 2021. 1. 1.
- 4) 지원기준 : 연 70포인트 (70,000원)

나. 문제점

- 1) 타 직능 사회복지시설 재직 종사자에게는 근무연수차등 적용으로 100,000원 ~ 200,000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임
- 2) 복지포인트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자기계발 등의 필요경비로 사회복지시설 직능별 구분 없이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직능 시설과는 1인당 무려 3배 가까운 차액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임.

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액도 타 사회복지시설의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처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 현 70,000원(1인/년)을 100,000원~200,000원(1인/년/근무연수차등)으로 증액 지원

2-5. 기초생활 수급자 입원 시 간병비 현실화

가. 기본현황

- 1) 지원근거 :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제주특별자치도)에 의거
- 2)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3) 지원기준 : (8시간 기준, 주야간 공통) 30,000원 (12시간 기준)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 (45,000원 × 20일)

나. 문제점

- 1) 실제로 병원 간병비는 1일 기준 130,000원이 소요되어 간병비 사용에 현실적이지 못함
- 2) 간병비 지원기준을 20일로 한정 되어 있어, 심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20일 이상 장기적인 병원 입원 시 소요되는 비용 발생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다. 따라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현실화를 위한 증액이 절실함.

(소요예산)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입소자
- 1인당 지원액 증액 : 일130,000원 × 20일 = 2,600,000원

3-1.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 기준에 의한 인력 증원

가. 전국 사회복지관 중 별도법령에 의한 사업 종사자를 제외한 사회복지관 1개소당 평균 종사자 수는 17.0명(정규직 14.6명, 비정규직 2.4명)으로 이며, 지역별 종사자 수는 서울이 가장 높고, 광주와 제주가 가장 낮게 나타남

나.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12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2년 3월 16일 입법예고 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내용: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포로 규정(안 제23조의1항)

구분	도(세종시 포함)	광역시	서울특별시
합계	12명 이상	13명 이상	19명 이상
※비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배치 기준을 위의 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다.			

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복지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타기관과의 연계성, 특정 대상을 지정하거나 배제하지 않은 지역사회의 모든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포괄하는 유일의 기관이며, 민·관 협력의 핵심 기관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코로나19 등의 예상치 못하게 접하게 될 문제에 대해 가장 선도적 역할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가 필요한 상황임.

라. ‘지역사회통합돌봄’ 과 ‘통합복지하나로’ 로 대표되는 전달체계 개편,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인력증원으로 지역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야 함.

3-2.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 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포괄적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 지원,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 등 지역복지 최일선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나. 제주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2개소(아라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가 있음. 제주시내, 서귀포시내 위치한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인구 중 아라 LH아파트에 약 60%(696세대 중 417세대), 서귀포 LH아파트에 약 35%(400세대 중 139세대)가 독거 세대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임.
- 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알콜 의존증과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
- 아라LH아파트 내 정신 및 알콜 의존 - 중증, 경증 포함: 약 23% (159명) 거주
 - 서귀포LH아파트 내 정신 및 알콜 의존 - 중증, 경증 포함: 약 15% (60명) 거주
- 라. 따라서 이들을 위한 좀 더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를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인력을 사회복지관에 배치하는 제도가 필요함.
- 마.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법령개정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관 시설안내」에 임의규정으로 명시할 계획에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3-3.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제도적 정착 및 지속 추진

-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분절된 전달체계를 통합화하고, 민·관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의 한계를 극복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나.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민·관 협업플랫폼’과 연계하여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다. 1차 시범사업(2020년 1월 ~ 2021년 12월, 2년) 후 사업추진 기관과 이용자 180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품질, 서비스 만족, 행복감 모두 긍정 평가를 얻음.
- 시범지역 3개동(아라동, 노형동, 동홍동), 인력배치 16명(동 주민센터 등 7명, 복지관 각 3명)
- 라. 2022년부터 시작되는 2차 시범사업은 기존 동(洞)지역과 더불어 읍·면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 마.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축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확정시 18개 핵심사업에 포함되었음. 따라서 제주도내 어느지역에서나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협회

4-1. 사회복지법인 전담인력 지원

- 가. 사회복지법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임.
- 나.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그 자체는 물론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법인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을 비롯해 각종 피감업무,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라.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자체의 운영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만 있음)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 부담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함.
- 마. 사회복지법인 전담인력이 배치될 경우 제주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및 관리, 지도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짐은 물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운영 투명성 제고의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임.
- 바. 사회복지법인 전담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법인 운영 사무의 공백 및 불안정성 최소화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 인력의 법인 업무 겸직을 허용해야 함.

4-2. 사회복지법인 운영비 지원

- 가.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를 대신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적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운영해 왔으나 대부분의 법인이 운영비 지원이 없이 영세하여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주체로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은 운영비의 지원이 없어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가 곤란한 상황임.
- 다. 영세한 법인의 경우 법인 직원을 따로 둘 수 없어 시설직원이 업무를 겸직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를 금지함에 따라 법인 운영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 라.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세무 관련 의무사항 등 법인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업무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없어 운영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법인의 운영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임.
-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없어 사회복지법인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음.
- 바.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면, 법인 산하시설 운영비 중 3~5% 범위 내에서 법인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 (일본의 경우 5% 범위 내 지원이 있음.)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5-1.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가. 그동안 사회복지 정책은 효율성 중심의 수혜자의 양적 확대에 집중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함

나. 국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 증가는 사회복지 종사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남.

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과 적용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라. 이에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일과 휴식이 보장되는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과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 발굴 시행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동기부여, 근무만
족도 등을 향상시켜 도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야 함.

- 1) 예기치 못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상해보험료 지원(정부 50%, 지자체
50%)
- 3)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2개월 유급병가제도 시행
- 4) 대체인력지원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5-2. 국립 사회복지사 연수원 유치

- 가. 사회복지사 등의 학술연구, 전문연수, 힐링 등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국 사회복지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립 사회복지사 연수원 제주 유치 필요
- 나.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일선복지 현장에서는 폭력, 소진, 스트레스, 상실 등 다양한 위험과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에게 힐링과 쉼, 회복 및 치유 등을 위한 환경 구축 필요
- 다. 민선7기 원희룡 도지사는 여러 차례 국립 사회복지사연수원 제주 유치를 표명함
- 2019년 사회복지정책대회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2019.06.14.)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과의 면담시 제주 유치 표명(2020.11.24.)
- 라.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사회복지공약에 사회복지 연수원 건립 포함
-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치유 및 회복 지원
 -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는 연수원을 통해 소관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능력과 교양 배양 기회 보장
 - 중앙정부와 지자체 업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연수시설은 전무
- 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천혜의 환경과 인프라를 통한 MICE 산업의 최적의 도시로서 잠재력이 우수하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도 Edu-MICE 비즈니스 모델 실현이 포함됨
- 바.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들이 휴식과 치유 등을 위한 국립 사회복지사연수원 제주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6-1. 보건복지부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준수

가.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제주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원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이하 수준임.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종사자 배치기준(p.273)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3명	*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사무원	1명	*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기능직	1명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명칭과 다르게 보호(돌봄)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임. 21년 기준 4인당 1인 배치로 인력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안전 및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주요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22년 기준 3인당 1인으로 지원기준을 변경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기준을 신속히 적용하여 인력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함.

다. 소규모시설의 특성 상 사회재활교사가 사무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재할인력의 부족 및 업무의 과중화로 이직률이 높아, 업무의 분리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도 사무원 1명을 배치 권고하고 있으나 지자체 협의의 항목으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7-1.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통비 및 복지포인트 지원체계 현실화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2조)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투명·적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됨을 시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인식하에 꾸준히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능 간의 차별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상황임.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인 경우 동일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통비를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교통비 지급액, 월 1회)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없음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 10만원

다. 또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트 지원액이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액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복지포인트 지급액, 연 1회)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 160명에 국한, 7만원
-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근무연수에 따라 10만원~20만원

라. 동일지역에서 동일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인으로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교통비 지원 및 동일한 수준의 복지포인트가 지원되어야 할 것임.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8-1. 제주형 아동 돌봄 서비스 실현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

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등)이 별표 14에 의거 함.

- 29인 이하 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배치 됨.
-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생활복지사 1명 추가 가능하지만, 현재 제주도 66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29인 이하 시설이 50개로 전체의 76%를 차지함.

나. 1인 다역의 과중한 업무로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의 어려움.

- 2인 종사자(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3명)가 평균 29명의 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육지원 외에 사무행정, 회계, 급식조리, 차량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2년 11월 27일부터는 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화로 추가인력 배치가 시급한 상황임.
- 인력 부족의 문제를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근무요원, 한시적 돌봄, 자원봉사자 등의 단기적이고 비정기적인 인력으로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함.

다. 아동·청소년들의 다양성에 따른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 요구에 효과적인 대처 어려움.

- 2022년 3월 초 기준 1720여명의 이용 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동이 340명(20%),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43명(3%), 청소년 259명(15%)등 이용자의 다양성.
- 코로나 19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 문제와 함께 사회적 고립감 심화, 반사회성 등의 정서적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8-2.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로 안정적인 제주형 아동통합돌봄 서비스 구현

가. 지역아동센터 공립화를 통한 운영의 안정화 도모

- 2020년 7월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 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함.
- 취약계층 아동 돌봄의 중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설치의 대한 국가 책임은 권고 수준에 머물고, 설치 의무가 민간에게 맡겨져 있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아동복지의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유휴공간에 기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공립화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 강화가 필요함

나. 안전한 공간 유지를 통해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적 보호 도모

- 돌봄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성 담보
- 지역아동센터 공간의 안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전세 또는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안정화
- 현재 지역아동센터 건물 소유 형태는 전·월세가 다수를 차지함.(표 참조)

<지역아동센터 소유형태>

단위 : 개소(%)

구 분	전체	자가	전세	전월세	월세	무상임대	기타
센터 수	4,008	649	124	643	1,237	1,271	84
비율	100.0	16.2	3.1	16.0	30.9	31.7	2.1

※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분석 불가능한 시설

9-1. 지역자활센터 기본 인프라(사업장) 무상임대 지원

- 가.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공부조 전달체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와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수익사업 중심의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제주도 내 타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다르게 지역자활센터 시설과 공간에 대한 지원 미비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효율적인 자활 지원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다. 제주도 내 4개 지역자활센터 중 서귀포시 소재 2개 지역자활센터는 사무실, 참여자 상담 및 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제주시 소재 2개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사무실과 교육장을 임차하여 사용 중임.
- 라. 또한 지역자활센터 내 사무실, 교육장 공간과 자활근로사업단 39개 사업단 장소 유상 임대보증금(314,000천원) 및 연임대료(약 673,630천원)로 인해 센터 및 자활근로 사업비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마. 위와 같이 지역자활센터 기본시설 뿐만 아니라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부합하는 공간시설 부재와 비용 증가로 인해 효율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바.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특성에 맞는 ‘표준 시설설치규정(안)’ 마련 △ 2년 내 제주시 2개 센터 사무실 및 참여자 상담, 교육장 공간이 마련된 공공시설 설립 또는 공공시설 무상임대 제공 △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 내 무상임대 제공이 필요함.

9-2. 자활사업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와 활성화

- 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관리·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함.
- 나. 현재 도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단 39개(참여주민 293명)와 자활기업 20개(참여주민 139명)가 운영 중이며 약 17개 업종에서 20가지의 제품과 집수리, 간병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 판매하고 있음.
- 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 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사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이 제정되어 있음.
- 라. 그러나,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산하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나 실질적인 활성화가 미비함.
- 마.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산하기관에서는 자활사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목표액을 제시하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실적 우수 공공기관 및 부서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규 자활근로사업 개발과 참여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사업을 이전해야 함.

9-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도내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 가. 지역자활센터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율과 사기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의 질을 높여 제주도 내 자활사업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제주도가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2015년도 제정하였으나, 지역자활센터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제주도 내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건비를 받고 있기에 처우개선이 시급함.
- 다. 제주도 내 타 사회복지시설 대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낮아, 장기근속율이 낮고 근무 기피 현상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에 대한 지속가능한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의 단절 현상이 발생함.
- 라. 또한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내 ‘시설별 정원표’도 수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직급별 정원표’와 맞지 않기에 개정 필요함.
- 마.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2023년부터 적용 및 개정(1개 센터 당 연평균 부족액 46,000천원×4개센터 = 184,000천원 확보 필요)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시설정원표’ 개정이 필요함.

9-4.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 확충 및 사업 활성화

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 확충과 자활기금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사업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조기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다. 2022년도 기금 운영계획은 비용자성 사업 10건에 444,315천원, 융자성 사업 100,000천원 등 544,315천원이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라. 최근 응모를 통한 자활사업비 지원은 매칭금을 전제로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에 이와 관련한 매칭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 응모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주지역 자활사업 지원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매칭사업 예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 1개소당 5천만원(1:1매칭)

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금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필요함.

○ 2023년도 기금 예산편성 시 매칭사업을 위한 사업비 편성이 필요함.

10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 그룹홈 인력 충원

- 가. 그룹홈은 시설장 포함 총 3명이 아이들 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상근 나머지 2명의 복지사들이 48시간씩 교대로 아동케어 및 업무를 보고 있음.
- 나. 입소아동 중 장애인들과 미취학아동들 있어서 혼자 아동을 보기에 역부족이고 체력적인 손실과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있음.
- 다. 그룹홈의 특성상 사회복지사들이 48시간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간외수당은 40시간만 인정받고 있음. 인력충원을 통해 근무시간 축소가 필요함.
- 라. 추가 인력지원으로 아동을 전담 관리할 수 있어서 복지사들의 야간 및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질적이나 양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10-2. 그룹홈 임대료 지원

- 가. 소규모복지시설은 개인이 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주체도 개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도 기관 대표가 자비로 충당하고 있어 매해마다 발생하는 임대료로 큰 고충이 발생함.
- 나. 타 지역은 현실적인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음.
- 다. LH 연계로 임대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그룹홈이 들어설 수 있는 규모가 없고 있더라도 외지라 아동들이 등하교에 큰 문제가 발생함.
- 라. 소규모 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임대료 지원 예산 확보 및 LH 연계 임대지원 절실.

11-1.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

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지역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비슷한 서울의 경우 노인복지관 83개소, 대구 19개소, 대전 8개소, 광주 9개소, 울산 14개소인 반면 제주지역은 3개소(분관 1개소 포함)에 그치고 있음.

나. 현재 운영 중인 3개 노인복지관(분관 포함)인 경우에도 시설이 협소하여 1일 이용 가능 인원이 400명대 수준밖에 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으로 노인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음.

- 복지관별 1일 이용 가능인원 : 도 노인복지관 200명, 도 노인복지관 분관 70명, 서귀포시노인복지관 150명

다. 이는 노인복지관 이용이 60세부터 가능함에 따라 2021년 11월 말 기준 제주도의 60세 이상 인구(159,815명) 가운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0.3%(3개소 1일 이용인원 500명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적으로 노인 대상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가 시급하며, 농어촌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노인복지관(분관)을 설치하여 지역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12-1. 장애인복지관 최소 인력 기준에 의한 인력 증원

가.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의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정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권고하고 있으나 2022년 3월 현재 도내 2개 장애인복지관(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이하 수준임.

- ① 정원 40명 이상 복지관(1국 8팀, 2,000㎡ 이상) ② 정원 30 ~ 39명 복지관(1국 7팀, 1,500㎡ 이상)
③ 정원 20 ~ 29명 복지관(1국 6팀, 1,000㎡ 이상)

나. 보건복지부 정원 기준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인력 증원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 대응 및 장애인복지관의 고유목적 주요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개선

- 사회복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의 보조금 사용 규정 명문화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보조금통합관리운영지침 지방보조사업 정산 및 관리의 비용부담 규정에는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 자체재원으로 부담함. 다만,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음.

나. 상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매년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으로 수백만원의 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에서 객관성 및 형평성의 부재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나. 사회복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대부분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써 사회복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필요

12-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개선

- 사회복지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증축 보조금을 현실 단가에 맞게 매년 상향 조정
- 사회복지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증축 자부담율을 최대 5%까지로 제한 규정 마련

- 가. 건축 자재비 및 건축단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증축 보조금 책정 금액을 현실에 맞게 매년 상향 필요

- 나. 사회복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대부분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써 신·증축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율을 최대 5% 이내의 범위에서만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1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3-1.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인력 고용안정 보장

- 가. 장애인거주시설인 경우 사회복지사 등은 거주인을 위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함에 따라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는 추가인력을 채용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시킬 수밖에 없음.
- 나.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거주시설에 채용된 시설관리인력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인건비 지원(제주시인 경우 1,600만원~1,800만원)으로 단기계약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처우로 인해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금 외에 추가되는 인건비를 시설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 다. 이로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사가 겸임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시설관리업무의 전문성 부족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라. 전문인력에 의한 시설 거주인의 돌봄서비스 이용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전문가에 의한 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거주인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 따라 시설관리인력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증액 등의 조치가 필요함.

14-1.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비율 3% 확대

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창출 및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나. 현행 법률상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은 1%임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구매 비율 1%에만 맞추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 1%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비율 2020년 1.17%, 2021년 11월말 기준 1.2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비율 : 중소기업 창업기업 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5%, 사회적기업 3%, 여성기업 3%

다.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나 자율적 구매 촉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지사의 확실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의가 있을 때 제주지역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율을 견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제주도인 경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의무구매 실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9년 대비 0.59% 증가한 구매실적을 올렸음. 이는 도정의 결심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상품 구매비율은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 바와 같음..

1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 증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급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중증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생산성이 극히 낮아 매출 증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는 근로장애인에 대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연결되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음.

다. 또한, 코로나19, 환율인상, 유가상승, 경기침체 등 시설 자체 역량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라. (시설운영 예산 증액 관련)

재료비와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생산품 원자재 및 연료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액 보전 지원이 필요함.

마. (부가가치세 지원 관련)

- 1)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해당 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음.
- 2) 직업재활시설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일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가격 경쟁력마저 약화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3) 직업재활시설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 매출증대를 통한 근로장애인 임금 인상 및 고용 촉진·유지로 연결되어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임.

15-1.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확대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확대
- 거주시설 퇴소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확대

- 1)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대상 인건비 지원제도를 2019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음.
- 2) 그러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자들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3) 정신장애인들은 취업을 위해 장기간 훈련이 필요함에도 시설 여건상 충분한 수당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훈련받은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지원 형평성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나. 거주시설 퇴소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 2) 이에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신장애인으로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6-1. 청소년복지사업 제도개선

- 청소년쉼터에 임상심리치료사 인력 배치
- 일관성 있고 원칙 있는 청소년복지사업 추진

가. 청소년쉼터에 임상심리치료사 인력 배치

- 1) 최초 청소년쉼터가 설립 될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청소년들의 변화 양상이 급격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정책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복지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음.
- 2) 최근에는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자해, 자살시도, 정신분열증상 등 정신과적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의 입소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 청소년쉼터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3) 또한,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인 경우 장기보호하도록 되어 있어 단기간 내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인해 소규모 시설 환경에서 또래집단간의 갈등과 스트레스 발생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임상심리치료사 배치 등)이 확대되어야 함.

나. 일관성 있고 원칙 있는 청소년복지사업 추진

- 1) 제주지역 청소년복지사업은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판단과 의지 여하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동일한 ‘쉼터’ 인 경우에도 행정시에 따라서 민간신고시설 또는 위탁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제주도와 행정시 공무원 간 소통 부재와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 부족해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있음.
- 2) 이에 제주지역 청소년복지사업의 일관성 있고 원칙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며,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후보자 답변 서식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제안 정책 아젠다 답변서

(답변기한 : 2022. 5. 13, 보내주실 곳 : jejubokji@hanmail.net)

소속 정당		후보자 성명	(서명/인)
-------	--	--------	--------

상기 본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서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에서 제안한 정책 아젠다의 공약 수용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I

6대 핵심 아젠다

연번	정책 아젠다	답변 (해당 칸에 ○ 표시)		
		전부 수용	부분 수용	수용 불가
1	사회복지예산 30% 확보			
2	전 도민 사회보장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실행			
3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			
	3-1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사회복지부서 개방형 임용제도 유지			
	3-2 '도-행정시 복지사무예산 조정위원회' 운영			
	3-3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으로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100% 설치			
	3-4 제주특별자치도 '돌봄 정책관' 직제 신설			
4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환경 조성			
	4-1 ICT 융합 기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복지 지원센터' 운영			
	4-2 사회복지현장 안전보건지원 시스템 구축			
	4-3 도민복지대학 상설 운영			
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협치 기본조례」 제정			
6	사회복지종사자 안정적 처우 보장			
	6-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6-2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확대			

II 사회복지 분야별 아젠다(2-1)

연번	정책 아젠다	답변 (해당 칸에 ○ 표시)		
		전부 수용	부분 수용	수용 불가
1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1-1 여성복지사업 제도개선			
	1-2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설치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협회			
	2-1 비영리법인 운영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2-2 양로시설 냉난방비 현실화			
	2-3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인상			
	2-4 복지포인트 지원액 인상			
	2-5 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시 간병비 현실화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			
	3-1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 기준에 의한 인력 증원			
	3-2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3-3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제도적 정착 및 지속 추진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협회			
	4-1 사회복지법인 전담인력 지원			
	4-2 사회복지법인 운영비 지원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5-1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5-2 국립 사회복지사 연수원 유치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6-1 보건복지부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준수			
7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협회			
	7-1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및 복지포인트 지원체계 현실화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8-1 제주형 아동 돌봄 서비스 실현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			
	8-2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로 안정적인 제주형 아동통합돌봄 서비스 구현			

II 사회복지 분야별 아젠다(2-2)

연번	정책 아젠다	답변 (해당 칸에 ○ 표시)		
		전부 수용	부분 수용	수용 불가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			
	9-1 지역자활센터 기본 인프라(사업장) 무상임대 지원			
	9-2 자활사업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와 활성화			
	9-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도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9-4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 확충 및 사업 활성화			
10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 그룹홈 인력 충원			
	10-2 그룹홈 임대료 지원			
1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			
	11-1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			
12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2-1 장애인복지관 최소인력 기준에 의한 인력 증원			
	1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개선			
	12-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개선			
1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3-1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인력 고용안정 보장			
14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4-1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비율 3% 확대			
	1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확대			
15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15-1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확대			
16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호남지부 제주지회			
	16-1 청소년복지사업 제도개선			

Ⅲ 수용 불가 및 부분 수용 사유

연번	수용불가 및 부분 수용 사유

※ 안내사항

1. 답변서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제주복지넷’ (www.jejubokji.net)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각 후보가 기한 내 제출한 답변서는 통합정리하여 공개됩니다.
(답변기한 : 2022. 5. 13, 보내주실 곳 : jejubokji@hanmail.net)
3. 기타 문의사항 : 포럼 간사 김성건(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T. 702-3784)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